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8. 24 선고 2018가합1010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기로전원마을 주민협의회

피 고 성한개발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8. 7. 20

판결 선고 2018. 8.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9. 12. 31. 약정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8년경 현재의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기로과수농장(현 기로전원마을)'을 조성하고 위 농장 부지를 택지와 도로로 나누어 구획한 후 1979년 택지를 분양하였다.

피고는 1979. 12. 31.경 위 택지 수분양자들에게 택지 분양이 완료되면 당해농장 내 도로를 수분양자들에게 귀속시켜주기로 약정(편의상 피고의 기로과수농장에 관한 분양이 있었던 해인 1979년의 마지막 날을 약정이 있었던 날로 본다, 이하 '이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로과수농장의 택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150세대로 구성된 단체이다.

다. 기로과수농장 내 도로의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9. 12. 31.자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강두례 판사 김혜령 판사 김다슬

별지

1) 다만, 원고가 제출한 별지 기재에 일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다른 기재가 있으나,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기로 한다.